

서울고등법원 2024. 8. 7 선고 2024나2007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8. 7 선고 2024나2007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50993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김준태

피고, 항소인 1. B종교단체 C교회(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우

담당변호사 정인균

변론종결 2024. 6. 5.

판결선고 2024. 8.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50993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E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D)에게 2023. 6. 9.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E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원고는 당심에서 신탁계약 해지일자를 정정하였다)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종교단체 C교회(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4. 교환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종교단체 C교회(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15행의 “G 외 1필지”를 “G”로 변경한다.

- 제3면 9, 10행의 “상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사이판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E의 배우자인 J 외 1인에게 각 소유권”으로, 12행의 “피고 교회에게”를 “J에게”로 각 변경한다.
- 제4면 10행의 “이 사건 소장”을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3. 6. 9.”로, 11행의 “신탁계약 해지”를 “2023. 6. 9. 신탁계약 해지”로 각 변경한다.
- 제4면 19행을 “J이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고 사이판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로 변경한다.
- 제5면 5행의 “피고 교회가”부터 6행의 “합의하였다는”까지 부분을 “J이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고 사이판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다는”으로 변경한다.
- 제5면 7행의 “오히려”부터 9행의 “수령하여 왔고,”까지 부분을 “오히려 갑 제8, 9,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의 형으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I이 이 사건 해지약정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다가,”로 변경한다.
- 제5면 11행의 “점유 및 수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계속하여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변경한다.
- 제5면 12행의 “피고 교회에게”를 “J에게”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김경란, 판사 권혁중 사무분담 변경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